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소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 용 대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이 조례안은 2010년 3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3월 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국가기관에서 징수하는 지방소비세를 시도 재정보전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29조 개정, 시행(10.1.1)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임

3. 주요내용

- 지방소비세액을 재정보전금 재원에 포함(안 제4조)

4. 검토의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1일 지방재정법 개

정에 따른 지방소비세액을 재정보전금 재원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북도의 자료에 따르면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라 우리도에서는 2010년도 세수가 약 1,015억 증가할 것이고, 본 조례 개정으로 시군 일반재정보전금은 323억 5,728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에는 이견이 없음.

붙임 :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고자료 1』 일반재정보전금 교부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07	2008	2009	2010 (지방소비세분)
총 계	347,550	121,293	119,608	106,647	144,733 (32,357)
청주시	126,061	42,540	43,742	39,779	53,238 (11,902)
충주시	47,810	17,408	17,029	13,372	18,556 (4,149)
제천시	28,608	10,426	9,660	8,522	11,146 (2,492)
청원군	36,970	12,585	11,950	12,434	16,883 (3,774)
보은군	9,564	3,413	3,283	2,867	3,965 (886)
옥천군	12,790	4,576	4,336	3,878	5,227 (1,168)
영동군	11,727	4,081	3,994	3,652	4,825 (1,079)
증평군	9,468	3,368	3,237	2,863	3,798 (849)
진천군	17,893	5,868	6,246	5,779	7,571 (1,693)
괴산군	10,702	3,718	3,618	3,366	4,472 (1,000)
음성군	27,021	10,214	9,413	7,394	11,362 (2,540)
단양군	8,933	3,094	3,098	2,740	3,691 (825)

※ 1) 2010년도는 추정액이며, 2010 지방소비세분은 지방소비세 예상액 1,015억원에 대한 일반재정보전금 배분 예상액 임.

2) 2009 : 2010년도 예산으로 교부할 도세 초과징수분 6,536,455천원 포함된 금액임.